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이 개정(법률 제16617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5. 27. 시행)됨에 따라,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·준공·중지의 통보)”를 “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·준공·중지·재개의 통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본문 중 “착공·준공·중지”를 “착공·준공·중지·재개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착공·준공·중지”를 “착공·준공·중지·재개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
☐ 착공 **통보서**
☐ 준공
☐ 공사중지
☐ 공사재개

사업명	
사업자	
사업장위치	
평가 협의일	
착공일	
준공일	
공사 중지	중지일
	공사 재개일
	사 유
	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
(준공 · 공사중지 · **공사재개**)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자

(서명 또는 인)

승인기관의 장 · 환경부장관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0조(<u>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</u> <u>착공 · 준공 · 중지의</u> <u>통보</u>) 법		제20조(<u>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</u> <u>착공 · 준공 · 중지 · 재개의</u> <u>통</u>		
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		<u>보</u>) -----		
상사업의 <u>착공 · 준공 · 중지</u> 의		---- <u>착공 · 준공 · 중지 · 재개</u>		
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		-----		
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		-----		
에 따라 <u>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제1		----- <u>해야</u> -----		
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		-----		
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		-----		
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.		-----.		
제38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생		제38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		
략)		과 같음)		
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		② -----		
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		-----		
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		-----		
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		-----		
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		-----		
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		-----		
<u>하여야</u> 한다.		<u>해야</u> --.	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	
2.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		2. -----		
대상사업의 <u>착공 · 준공 · 중지</u>		----- <u>착공 · 준공 · 중지</u>		
의 통보 시 제출서류: 2015년		<u>· 재개</u> -----		
1월 1일		-----		
3. (생략)		3. (현행과 같음)		